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2. 12. 13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: 2022년 11월 10일
- 나. 발 의 자: 우경란 의원 외 5명
- 다. 회부일자: 2022년 11월 18일
- 라. 상정일자: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
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(2022. 11. 25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우경란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- 사회·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영등포구 난임부부의 경제적·심리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,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 -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-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4조)
-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(안 제5조~제6조)
- 중복지원 제한 및 중단, 환수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9조)
-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- 본 제정 조례안은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임신·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난임부부의 심리적·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극복 하고자 함.
 - 안 제2조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인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난임에 대해 규정함.
 -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난임극복 관련 정책 추진·발굴 등의 노력을 명시함.
 -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,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함. 현재 구민을 대상으로 난임 지원에 대한 별도 조례는 없는 상황임.
 - 안 제5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실제 거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.
 - 안 제6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, 난임 관련 교육 등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.
 - 안 제7조는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을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- 안 제8조·제9조는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치료 중 임신 등으로 자격 상실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지원 중단, 환수 조치하도록 함.
- 안 제10조는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난임극복 지원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정함.

○ 검토 결과

-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모자보건법」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시책 마련 등 책임을 규정하고,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. 이에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

(우경란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	63
번 호	

발의연월일 : 2022년 11월

발 의 자 : 우경란、이성수、양송이
신흥식、최봉희、이규선
의원(6인)

1. 제안이유

사회·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영등포구 난임부부의 경제적·심리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,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극복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4조)

라.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(안 제5조~제6조)

마. 중복지원 제한 및 중단, 환수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9조)

바.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3. 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모자보건법」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2. 11. 8. ~ 11. 13.)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모자보건법」 제3조 및 제11조와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의 경제적·심리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난임”이란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구청장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, 난임극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·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, 발굴하는 등 난임극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)로 한다. 단,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.

제6조(난임극복 지원사업 등) 구청장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
2.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
3.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중복지원 제한)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8조(지원 중단)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1. 난임부부가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
2.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
3.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

제9조(환수)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,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.

제10조(비밀누설의 금지)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